

제19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2013.12.11(수) 10:00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거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관한 조례안-----	9
4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5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6	거창군 수승대만광지 관림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7	거창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21
8	거창군 삶의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3
9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26
10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9
11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2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1. 2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1. 26.

2. 제안이유

- 가. 200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 나.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개정 이유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13조 사용료 반환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전부 또는 80%로 구체화하였음.
- 나. 그 밖에 읍·면복지회관의 설치규모, 사용료 수가, 사용허가,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위탁,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조례 제13조 임대료 및 사용료의 반환에서 복지회관은 행정재산 임으로 일반재산에 해당되는

임대료는 삭제하고, 반환금액을 전부 또는 80%로 구체화하였음.

- (1) 천재지변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부
-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 전부
- (3)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전부
- (4) 사용 예정일에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80퍼센트

나.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한 사항

- (1) 복지회관의 설치규모 :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 관련 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건축을 할 때 지역 실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삭제하였음.
- (2) 사용료 수가 : 조례 제23조에서 준용규정이 있으므로 중복되어 삭제하였음.
- (3) 사용허가 및 임대사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된 내용임으로 삭제하였음.
- (4) 읍·면개발자문위원회 : 운영되지 않는 기구임으로 읍·면장으로 변경
- (5) 위탁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는 내용과 중복됨으로 삭제하였음.
- (6) 지도감독 :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음.

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었으며 그 밖에 중복되는 조항이나 상위법과 불부합하는 내용을 삭제 또는 정비 하는 내용임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1. 2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1. 26.

2. 제안이유

- 가. 200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삶의 쉼터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 나.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개정 이유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8조 사용료 반환 조항이 없었으나 이번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전액 또는 10/100 등 구체화하였음.
- 나. 그 밖에 노인복지관의 명칭 변경, 위탁에 대한 중복된 내용 삭제 등을 정비하였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조례 제8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반환 기준을 구체화하였음.
 -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삶의 쉼터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 삶의 쉽터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삶의 쉽터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신고할 경우 등 : 전액반환

- (2) 삶의 쉽터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신고할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반환
- (3) 사용개시 이후 삶의 쉽터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 (4) 삶의 쉽터 사용 중 사용을 포기 또는 중단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나.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한 사항

- (1) 거창군 노인복지회관 명칭 : 「노인복지법」에 따라 거창군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함.
- (2) 위탁운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문장을 간소화 하였음.

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거창군 삶의 쉽터 설치·운영조례」 제8조 제4항에 사용료 반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그 밖에 중복되는 조항이나 상위법과 불부합하는 내용을 삭제 또는 정비 하는 내용임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 나. 발 의 자 : 강창남,조기원,이성복,이애숙,백범영 의원
- 다. 회부일자 : 2013. 11. 2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1. 26..

2. 제안이유

- 가.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거창군에서 발생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진실이 규명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 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명예회복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당사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에 대한 규정.
- 나.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
 -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 (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1945년 8월 15일부터 6·25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써 보도연맹을 비롯한 국지적인 희생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05년 12월 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사법부의 재판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구제하게 되었음.

※ 우리 군에는 6·25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 거창사건인데 이미 사법부의 확정판결과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므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법 제2조제2항

나. 이에 따라 (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거창지역유족회가 구성되고 대상자들이 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신청하여 진실규명을 받았음.

다. 국회의 입법을 통해 **국가의 의무**로써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정치적 화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 법 제34조

피해 및 명예회복에서도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 법 제36조

라.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시행 방법으로 국가에서 「과거사 연구재단」을 독립적으로 설립하여 위령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 관리,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등을 하도록 정하였으나 최근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재정 부담과 집단민원의 이유로 설

립되지 않고 있음.

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족회가 원고가 되고 국가가 피고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다행스럽 게도 매년 군비를 지원하여 위령제를 지내는 등 거창군 차원에서 유족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음.

(1) 「제63주년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 위령제·추모식」

가. 일시 : 2013. 4. 10(수) 10:30

나. 장소 : 거창읍 대동리 포교당 심우사

다. 참석 : 유족회원 등 300여명

라. 주관 : 한국전쟁전·후거창지역민간인학살희생자유족회

마. 예산 : 5,800천원(국 1,500 군 4,000 자 300천원)

(2) 과거사정리위원회 추진사업 : 유해매장지 발굴사업, 호적정 리사업, 위령제 국비보조사업, 홈페이지와 군지 등에 왜곡된 사실 바로 알리기 사업 등

(3) 안전행정부 : 「이행관리단」을 신설하여 명예회복 사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 또는 관리하고 있음.

바. 이번 조례 제정은 관련법의 위임규정은 없지만 그 동안 군에 서 지원해 온 위령제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더욱 폭 넓은 분야 의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당사자와 유족을 위하여 현실적인 사 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하고 개정 조 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상위 법령 등 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다만, 군에서 추 진하는 업무의 성격상 기관위임사무는 제외하고 단체위임사무 에 한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한국전쟁과 6.25전쟁의 명칭문제 : 두 가지를 혼용하고 있음.

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 : 6.25사변일

제7차 교육과정 기준 : 6.25전쟁

외국 사람들이 지칭할 때 : 한국전쟁

※ 창원시에서 같은 조례를 2013.9.30. 제정운영하고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1. 2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1. 26.

2. 제안이유

- 가. 「지방공무원법」이 2013.12.12일자로 개정 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변경하고
- 나. 일반직, 별정직, 정무직을 현원 운영에 맞게 별표기준을 변경함.

3. 주요내용

- 가. 기능직과 계약직의 폐지 및 일반직 등으로의 통합(안 제2조 및 부칙 제4조 등)
 - 1)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
 - 2) 인사관리 방식과 직무분야가 유사한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으로써 직종 체계의 구분 및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함.
- 나. 조례개정 주요내용
 -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조정
 -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 (1) 별정직·정무직 비율 : 별정직 가운데 보건진료원 15명이 2012년 12월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현재는 별정직 1명, 정무직 1명뿐이므로 그 비율을 1% 이내로 하고, 일반직을 99% 이내로 함.

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 (1) 일반직 비율 : 현원 직급별 숫자가 최고 상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당초와 같이 변동 없음
- (2) 기능직 공무원 비율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삭제
-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변동 없음
- (4) 별정직 공무원 : 현원 1명의 급수에 맞게 7급 상당을 없애고 6급 상당을 100%로 변경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 (1) 기능직 50명을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모두 삭제
- (2) 일반직 6급이하 536명에 50명을 합하여 586명으로 변경

라. 이번 조례 개정은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려는 목적으로

2013.12.12일자로 개정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례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1. 2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1. 26.

2. 제안이유

- 가. 인구증가 시책 추진 사무를 재분장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함.
- 나.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현실 여건 등을 반영하여 담당부서를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인구증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업무를 창조정책과에서 이관
- 나. 인구증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인수
 - (1) 인구증가 종합계획수립 추진
 - (2)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추진
 - (3) 사이버 거창군민 만들기 홈페이지 운영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이 조례의 개정은 인구증가 정책 추진에 관하여 그 동안 창조정책과에서 담당을 해 왔으나 한시적 업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나. 여러 가지 긍정시책과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다. 특히, 창조정책과의 부서 성격인 새로운 시책추진, 발굴 등의 성격과 다르고 다른 자치단체의 담당부서 등과 비교하여 현재 창조정책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담당부서를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 나. 발 의 자 : 조기원, 조선제, 이성복, 이애숙의원
- 다. 회부일자 : 2013. 11. 2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1. 26.

2. 제안이유

- 가. 이 조례는 국가명승 제53호로 지정된 수승대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무료입장하게 함으로써 거창을 널리 홍보하고 이용객이 부담 없이 다녀갈 수 있도록 하고
- 나. 특히 국제연극제 기간 관람객 불편을 해소하여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불필요한 사용 용어 삭제
- 나. 관람료 징수기준, 징수방법, 징수면제 대상 등 삭제
- 다. 그 밖에 별표와 별지의 관람료와 관련된 것을 삭제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관람료 징수 현황

구분	이용객(명)		수입금액(천원)		증가율(%)	
	2012	2013	2012	2013	이용객	수입금액
입장료	53,280	64,145	50,139	59,454	20.3	18.5

- 나. 관람료 폐지의 단점 : 관람료가 폐지되면 거창군 세수가 감소하고, 매표소에서 입장객의 적정인원 통제가 어려우며, 이용객이 증가하여 수송대 시설 관리의 부담이 가중 됨
- 나. 관람료 폐지의 장점 : 방문객들이 이미 관람료 징수를 폐지한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불만요인이 있었으나 이를 해소할 수 있고 7~8월 성수기에 방문객의 출입이 용이하여 은하리 마을은 물론 수송대 주변 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람료 징수 인력의 절감효과가 있음.
- 다. 따라서 관람료 폐지로 인하여 교부세 산정 등 거창군 세입예산에는 미치는 영향보다 인근지역을 경유하는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수송대를 둘러 볼 수 있도록 하고 국제연극제 관람객을 비롯한 피서객들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함으로 세수감소 측면보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함.
다만, 엄격한 세수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진출입 자동화 시스템, 주차장시설, CC TV 등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함.
- 라. 이와 같이 이번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부칙변경

- 당초 : 이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변경 : 이조례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비표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상정 및 수정안 대비표

상 정 안	수 정 안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조례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 나. 발 의 자 : 조기원, 이성복, 이애숙 의원
- 다. 회부일자 : 2013. 11. 2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1. 26.

2. 제안이유

- 가.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거창군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과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음
- 나. 아울러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건강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나.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라.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마.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건강도시의 개념 :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아가는 가운데,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지역사회의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함.(세계보건기구,2004)
- 나. 건강도시 조례 제정 현황 : 창원시(2011.7.29), 진주시(2008.1.10), 양산시(2011.11.11), 남해군(2007.11.9), 하동군(2010.5.19) 등 경남 5개 시군
- 다. 입법예고 결과 반영 : 거창군의 의견 중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준용을 추가하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기능이 유사한 거창군 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시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반영.
- 다. 건강도시 조례의 범위가 보건 분야 뿐 아니라 환경, 산림, 경제체육분야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추세이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건강증진 정책의 체계적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적절함.
- 라. 그리고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1. 2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1. 26..

2. 제안이유

- 가. 노인, 여성, 장애인 통합복지시설인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통합복지시설인 쉼터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거창군 삶의 쉼터의 운영을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명 : 거창군 삶의 쉼터
- 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거안로 1266-41(송정리 941-1)
- 다. 규모 : 대지 15,057㎡ / 건축면적 2,206.3㎡, 연면적 5,508.99㎡
 - 노인·여성복지관 : 3,009.31㎡, 장애인복지관 2,499.68㎡
- 라. 사업내용 : 거창군 삶의 쉼터 운영
- 마. 위탁대상 사무
 - (1) 시설 : 거창군 삶의 쉼터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 (2) 운영 : 노인과 여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바.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5년
- 사. 수탁자격 : 경상남도 내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아.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자. 소요예산 : 예산범위에서 시설 종사자 임금 및 시설운영비 지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거창군 삶의 쉼터는 2005.10.11. 착공하여 2008.1.9. 준공되었고 이어서 2008.6.26. 개관이 되었으며 최초위탁은 2008.2.19.~2011.2.18. 3년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였음. 그 후 위탁기간 만료로 2011.2.19.~2014.2.18. 3년간 위 단체에 재 위탁하여 왔음.
- 나. 수탁자 선정 방법은 수탁법인의 공개모집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부적격 시 재공고하는 등 관련 법규를 따르며 특히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 위탁여부를 판단해야 함.
- 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위탁부터 현재까지 정상 운영되고 있는 거창군 삶의 쉼터는 노인, 여성, 장애인을 위한 통합복지시설로써 전문적 사업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을 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의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2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1. 25.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1. 26..

2. 제안이유

- 가. 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전문성활용, 탄력적인 사무처리,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을 장점으로 하고 있으며,
- 나. 그동안 우려되어 왔던 개인의 운영방법을 개선한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거창군 공립(동동)어린이집을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어린이집 현황

구분	시설명	소재지	면적(m ²)	정원	현원	보육교직원	비고
위탁	동동어린이집	거창읍 중앙로 2길 19	568	47	45	6	

- 나. 위탁기간 : 5년, 위탁기간 만료 시는 운영 실적에 따라 한차례만 연장 가능
- 다. 수탁자격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라. 선정방법 : 공개모집, 거창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군수 결정
- 마. 시설운영비 지원 : 예산범위에서 보육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동동 어린이집은 2011.3.5.~2014.3.4.(최초) 위탁 운영하여 왔으며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변경 위탁 여부를 결정코자 함.
- 나.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목적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음.

※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구분	직 영	위 탁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경쟁을 통한 교사 채용으로 전문성 및 임용의 객관성 확보 ◆ 신분 보장으로 안정적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이 강한 시설장에게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가능 ◆ 민간의 참여기회 확대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 안정으로 창의력 및 경쟁력 약화 ◆ 행정의 지나친 관여로 효율성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채용권이 시설장에게 있어 교사 채용의 객관성 확보 미흡 ◆ 장기 위탁 시 시설 부실운영 우려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 임면 - 직영시설 : 군수가 임명/ 후 보고 - 위탁시설 :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명 후 보고 	

- 다. 동동 어린이집의 여건이나 관련된 군민들의 의견을 존중함이 타당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동동어린이집이 현재까지 위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왔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운영방식을 개별적으로 적용할 필요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검토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1. 2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1. 26.

2. 제안이유

- 가. 현재의 보건소 시설이 노후 되었고 부지가 좁아 주차공간이 12면 밖에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함이 증대되고 있어서
- 나.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 가운데 공공용지로 이전하기 위한 신축 부지를 매입코자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4차 변경코자 하는 것임.

3. 취득재산

가. 취득재산의 개요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 득 사 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계					8,217,345			
취득	토지	거창읍 송정리 332-3번지 일원(현)	대지	7,060	2,776,345	2014~ 2015	보건소 이전신축	거창군, 송정지구 도시개발 조합
	건물	"		2,827	5,441,000			

나. 송정도시개발사업 공공청사용지 지정 : 7,060m²

- (1) 공유지 환지 4,919m² ⇒ 3,443m²(감모율 30% 적용)
- (2) 추가 환지취득 : 3,617m²(393,250원×3,617m² = 1,422,385천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현실태

구 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년도	주차시설	비 고
철근콘크리트 (지하1, 지상2)	2,023m ²	1,412m ²	1997.11	12면 (장애인 2)	

- 보건소 1일 평균 이용자수 : 300 ~ 350여명 정도

나. 이전 신축의 필요성 : 현존 보건소는 건축한지 15년이 소요되어 노후 되었으며, 부지가 협소해서 주차 공간 12면으로는 환자의 출입이 불편하고 사무공간도 부족하여 증축 또는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다. 특히 정신·지체질환자, 소외계층, 거동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치료 전문시설이 없어서 「정신·지체재활치료센터」를 건립해야 하는 시점에 기존보건소와 연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라. 이에 따라 2011년부터 보건소 증축을 위한 보건소 옆 대지면적 2,110m²(638평)를 구입하기 위하여 매입비 1,000백만원 확보 하였으나 부지매입비(건물 철거비 및 기반조성비 포함)가 2,000백만원 정도 소요 예상되어 보건소이전신축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선 부지매입이 필요함.

마. 그 후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 되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보건소 신축 부지를 공공용지로 포함.

※ 2013.11월 지구지정신청, 12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계획

바. 따라서 군민의 건강한 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보건소 건물

의 노후와 주차공간과 사무공간의 협소한 문제를 해소하고, 정신·지체재활치료센터 연계 운영 등의 효과를 판단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1. 2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1. 26.

2. 제안이유

○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 관련

- 가. 보훈회관과 노인회관은 복지시설로써 노후되거나 공간이 협소하여 이전 신축이 필요하며 장애인복합 문화관 건립은 장애인의 체계적 운동재활 프로그램운명을 위해 신축이 필요함.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성격이 유사한 단체를 거창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집적화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여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로 이전하기 위한 신축 부지를 매입코자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 치유의 숲 조성사업 관련

- 가. 덕유산과 백두대간에 위치하여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고 우수한 산림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함으로써
- 나.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시설로써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상 부지를 매입코자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 도심지 자투리땅 녹지공간 조성부지 매입 관련

- 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공공사업 이후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을 매입하여
- 나. 소공원 등 녹지공간을 만들어 주민 쉼터로써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취득재산의 표시

○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3,100	1,550,000			
취득	토지	송정택지지구	대지	600	300,000	2014	보훈회관 건립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대지	1,000	500,000	2014	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	
		“	대지	1,500	750,000	2014	노인회관 건립	

○ 치유의 숲 조성사업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49,515.4	38,690			5명
취득	토지	가조면 수월리 산15	임	28,329	9,349	2014	치유의 숲 조성사업	표주숙
		가조면 수월리 산15-1	임	198	78			최경호
		가조면 수월리 산15-2	임	1,965	778			최경호
		가조면 수월리 산15-3	임	2,584	876			김혜자
		가조면 수월리 산15-4	임	708	233			최경호
		가조면 수월리 산16	임	15,000	2,325			용당소하부락마을회
		가조면 수월리 산25	임	595	181			차정수
	건물	가조면 수월리 산19	임	136.4	24,870			오숙희

○ 도심지 자투리땅 녹지공간 조성부지 매입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매매취득	토지	거창읍 상림리 229번지 등 43필지	대지, 전, 답, 주차장, 창고 등	3,632	1,087,181	2014~2016	도심지 자투리땅 녹지공간 조성사업	양영숙 외 1인 등 다수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

가. 현실태

구분	소재지	건물현황				비고
		준공일자	대지면적	건물면적	규모	
보훈회관	거열로 209-1	2000.3.25.	157m ²	309m ²	지하 1층 지상 3층	3개 단체 입주
장애인복합문화관	신축예정					
노인회관	거열로 246-13	1992.10.6.	619m ²	566m ²	지상 4층	

나. 이전 또는 신축의 필요성

(1) 보훈회관 : 건물이 오래되어 노후 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차 공간이 없고 8개 보훈단체 중에 상이군경회, 상이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회 등 3개 단체만 사용하고 있어서 활용도가 낮으므로 이전 신축을 하고자 함.

(2) 장애인 복합 문화관 : 현재 시설이 없지만 5천여명의 장애인 건강지원과 여가활용을 위해서 다목적 복합문화관을 신축하고자 함.

※ 장애인 복합 문화관 활용계획

구분	주요시설	비고
체육시설	종합체육실(강당겸용), 헬스장, 재활실, 샤워장 등	
문화시설	문화공간, 예술공간, 여가활동 동아리방	
기타시설	시각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관리실, 사무실 등	

(3) 노인회관 : 현재 건물은 25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힘들고 회의실 등의 장소가 협소하여 각종 행사는 외부에서 별도로 개최하는 등 불편함이 많을 뿐 아니라 도로 이면에 위치하여 어르신들이 찾아오는데 애로가 있으므로 이전 신축을 하고자 함.

다. 이에 따라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선 부지매입이 필요하며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2013.11월 지구지정신청, 12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계획임.

라. 검토결과 : 위와 같이 보훈회관과 노인회관은 노후되거나 협소하여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전 신축하고 장애인 복합 문화관은 전체 장애인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고 일반인에게도 시설 개방을 통해 장애 차별의 벽을 없애는데 기여하도록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다만, 시설물 건립을 위해서는 열악한 재정 형편상 군비 부담을 최소화 하고 국·도비와 현 건물 매각 등 예산을 짜임새 있게 운영해야 함.

○ 치유의 숲 조성사업

가. 치유의 숲 : 50ha 이상의 면적에 치유센터, 치유숲길, 산림작업 체험장을 필수 시설로 하고 숲속의 집 등 그 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최소한의 산림치유시설을 설치하고 숙박시설은 숲 인근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임.

나. 거창군에서는 2013년 4월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하여 대상지를 가조면 수월리 일대로 선정하고 투융자 심사와 사업신청을 하여 국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 대상지 선정 :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고, 방문객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기존의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군유지가 다수 포함된 지역을 선정하였음.

사업개요

- (1)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19번지 외 1필지
- (2) 면 적 : 50ha
- (3) 사 업 비 : 4,800백만원
- (4) 사업내용 : 치유의 숲, 숲 치유센터, 산림욕장, 숲길, 건강증진센터 등

라. 필요성

- (1) 산림자원의 유지·증진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며, 지속가능하도록 종합적 계획에 의한 산림경영이 필요
- (2) 한편 거창군은 지리적으로 남부내륙의 중심지이며, 덕유산과 백두대간에 위치하여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고 우수한 산림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음.

마. 검토결과 : 위와 같이 우수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변 시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치유의 숲을 조성하도록 사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다만, 시설물 건립을 위해서는 열악한 재정 형편상 군비 부담을 최소화 하여 운영해야 함.

○ 도심지 자투리땅 녹지공간 조성부지 매입

가. 도시계획 시설이나 각종 공공시설 시행 이후 시가지에 남아있는 자투리땅은 방치되어 효용가치가 상실될 우려가 있음.

나. 이에 따라 자투리땅을 거창군에서 매입하여 소공원 등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면 주민의 쉼터로써 기대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기여함으로써 해당되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